

보도자료

2011년 6월 22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기획재정담당관 조경식과장(1610) 나.,다. 주파수정책과 김정삼과장(2270)
라. 방송진흥기획과 이태희과장(2310) 마.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2430)
바. 신규방송사업정책TF 김영관과장(2470)

2011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가. 2012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11.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등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11.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16개 사업자에 대한 재할당 심사결과를 토대로 재할당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 기준점수를 충족한 SK텔레콤 등 13개 사업자는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되, 일부회수 의견이 제시된 KT파워텔, 티온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축소 조정하여 재할당하고,
 - ※ KT파워텔은 14MHz→10MHz(811~816, 856~861MHz), 티온텔레콤은 4MHz→2MHz(816~817, 861~862MHz)로 축소
 - 기준점수에 미달된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에 대해서는 재할당하지 않기로 의결함

- 또한, 이동통신 3사의 재할당 주파수 등을 활용한 LTE 도입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이동통신 3사 모두 LTE 도입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폭증하는 트래픽 해소 및 관련 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LTE도입을 승인하기로 의결함

다.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계획」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경매방법을 포함한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및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EBS-TV '하나뿐인 지구' 재심에 관한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주의' 제재조치 처분(11.4. 22) 관련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심의하였으나, 원심 처분대로 '주의' 조치를 의결함

마. 2011년도 지상파·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 2011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방송과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

구분	사업자명	방송국명
지상파라디오	(주)경인방송	경인FM
	(주)제주방송	제주FM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FM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FM
	소계 :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
공동체라디오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분당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
	소계 :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
합계	1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

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첨부3 참조)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 (‘11.3.9)된 (주)쇼핑원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결함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개 요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디지털전환, 정보보호, 콘텐츠 제작 인프라 등에 중점을 두어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별	'11예산 (A)	'12년도 예산안		증감 ('11년대비)		
			지출한도	요구안(B)	B-A	%	
세입(안)	< 합 계 >	8,561	-	11,133	2,572	30.0	
	■일반회계	3,116	-	3,171	55	1.8	
	■방송통신발전기금	5,445	-	7,962	2,517	46.2	
세출(안)	< 합 계 >	7,669	7,961	8,746	1,077	14.0	
	■예산	소 계	3,208	3,047	3,047	△161	△4.3
		(일반회계)	3,050	2,827	2,827	△223	△7.3
		(혁특회계)	158	220	220	62	39.2
	■방송통신발전기금 ^{*)} (R&D)	4,461 (1,984)	4,914 (1,992)	5,699 (1,992)	1,238 (8)	27.7 (0.4)	

* 기금 총 운용규모 : 내부거래(200억원), 여유자금운용(2,063억원)을 포함하여 7,962억원

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내용

(1) 2012년도 세입 예산안

- 총 세입은 11,133억원으로 '11년도 8,561억원 대비 2,572억원(30%) 증가
- 일반회계는 3,171억원으로 '11년도 3,116억원 대비 55억원(1.8%) 증가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의한 사업자 과징금 등 증가
 - 주파수 할당방식 전환에 따라 전파사용료 등 감소
- 기금은 7,962억원으로 '11년도 5,445억원 대비 2,517억원(46%) 증가
 - 방송광고 등의 매출액 증가에 의한 방송사 분담금 등 증가
 - '11년도 주파수 할당 일시금 납부에 의한 여유자금 등 증가

(2) 2012년도 세출 예산안

- 총 세출은 총 8,746억원으로 '11년도 7,669억원 대비 1,077억원(14%) 증가
- 일반회계는 정보보호, 네트워크 인프라,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등에 총 2,827억원 편성('11년 3,050억원 대비 7% 감소)
 - 악성코드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4억원), 고출력 전자기파 측정 시스템(9억원), 우주전파재난 감시체계 구축(7억원) 등 총 8개 사업 신규 편성(36억원)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27→31억원), 기가인터넷서비스 활성화 선도사업(50→52억원) 등 총 11개 사업 증액(249→274, 25억원 증)
 -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63→45억원), 행정사무 정보화(64→62억원) 등 총 14개 사업 감액(947→874억원, 73억원 감)
 - 사업기간 만료, 유사사업 통폐합 등으로 우주전파연구센터(106억원), 전파자원 총조사(24억원), 전파방송관리(7억원) 등 총 6개 사업 종료(288억원 감)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파연구소의 지방이전(서울→나주) 청사 부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158→220억원, 62억원 증)
- 기금은 디지털전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소외 계층 지원 등에 총 5,699억원 편성('11년 4,461억원 대비 27.7% 증가)
 -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33억원),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지원(10억원), 아시아·유럽 국제 연구개발망(TEIN) 협력센터(13억원) 등 총 10개 사업 신규 편성(138억원)
 -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등(412→1,442억원), 주파수 회수 손실보상(8→220억원),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346→407억원) 등 총 22개 사업 증액(1,370→2,855억원, 1,485억원 증)

- 재정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 연구(42→37억원), 초고속공중망 구축 용자(200→120억원) 등 총 12개 사업 감액(1,435→1,164억원, 271억원 감)
- 사업기간 만료 등으로 3DTV 방송시스템 구축(20억원), 디지털전환 시범사업(33억원), 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2억원) 등 총 5개 사업 종료(122억원 감)

다. 향후 일정

- 2012년도 예산안(기금포함) 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6.30일)
- 2012년도 예산안(기금포함)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7~9월)
- 2012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제출(9월말 예정)
- 2012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10월 ~ 12월초)

지상파·공동체 라디오방송 재허가 기본계획안

가. 재허가 대상 사업자

○ 2011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 총 12개사, 12개 방송국

구분	사업자명	방송국명
지상파라디오	(주)경인방송	경인FM
	(주)제주방송	제주FM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FM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FM
	소계 :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
공동체라디오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분당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
	소계 :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
합계	1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 (9)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

심사항목	배 점	
	지상파	공동체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점	15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50점	150점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150점
5. 경영의 적정성	50점	150점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250점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
8. 청취자의 권익 보호(청취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평가 포함)	75점	50점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 필요사항	100점	100점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1,000점	1,000점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라.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마. 추진계획

- '11. 6월 : 재허가신청서 접수
- '11. 7~10월 : 청취자 의견 접수,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1. 11월 : 재허가 의결

홈쇼핑PP(주)쇼핑원 승인조건

□ 승인유효기간 :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

□ 승인조건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처분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요주주는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법원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중소기업 등 우대주주의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정관 상의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구성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의 주주(회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상품 선정 및 방송편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주구성의 적정성·건전성 확보방안
 - 나. 상품소개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시청자·소비자 권익실현 방안
 - 다.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지원 방안
 - 라. 중소기업상품 방송편성비율, 중소기업상품 구성의 다양성, 우수 중소기업상품 발굴, 공정·투명한 상품선정 등 상품 구성 및 확보방안
 - 마.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 바. 방송·콘텐츠 산업 및 유통산업 지원방안
8. 판매수수료 등 중소기업 지원 및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별도로 당해 연도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11.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